장학금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 학칙 제71조에 의거 학생들로 하여금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여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며, 학칙 제72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등록금을 납부한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8이상이고 F학점 과목(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실기, 졸업설계, 채플 제외)이 없는 자로서 제9조의 선발기준에 의한다.

   가. 해외봉사, 현장실습 참여 등으로 인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ASS/FAIL 로 평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ㄱ.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성적은 본교에서 수학한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

      ㄴ.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제외

      ㄷ. 모든 과목에서 FAIL로 평가되는 경우 장학생 선발 제외

   나.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이 입학한 학기에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은 학업성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전 학기 징계사실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교내장학금은 재학중 정규 8학기까지만 지급한다.
4. 지정장학금, 근로장학금, 보훈장학금, 봉사장학금, 새터민장학금, 우정장학금, 디딤돌장학금, 양지장학금, 사랑장학금, 위드유(다문화)장학금, 특별장학금Ⅰ유형 11항(총장이 추천한 자), 공무장학금 및 특별장학금 II유형은 제 1호의 성적기준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 성적기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지정장학금, 봉사 장학금, 근로장학금 및 특별장학금 Ⅱ유형은 제3호의 재학기준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6. 재학생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 장학금과 재학중 발생한 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은 지급일 당시 재학생이 아닐지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장학위원회 구성)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위원회는 총장과 교무위원들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학생지원처장이 대리한다.
3.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과장이 담당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2. 장학금 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장학사정관이 승인 의뢰한 사항
5.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장학사정관)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1. 장학사정관은 학생지원과의 장학금담당자 및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2.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1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장학사정관의 기능) 장학사정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여건에 맞는 장학금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별장학금 수혜가 필요한 학생의 (관련 증빙서류) 심사 및 위원회의 승인 요청
3. 기타 특별장학금 관련 상담 결과에 따른 위원회 승인 요청

제9조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본 대학교의 교내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기준, 구비서류 및 선발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신청시점을 선발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지급기준) 제9조의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범위는 납부한 등록금으로 한다.

제11조 (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등록시 납부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 장학금 및 납입금을 납부한 후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 혹은 한국장학재단 내 대출 상환처리 될 수 있다.

② 중복지원방지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등록금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장학금, 국가장학사업의 추가지원비, 대응투자 장학금, 외부장학재단(장학회) 및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의 생활비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자격상실 및 반환조치) 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자

격상실자가 장학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1. 제적자
2.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
3. 봉사장학금 수혜자 중 학기당 봉사기간의 1/2 미달 자
4.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시스템 심사결과 '지원불가'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장학금을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재학생은 제증명 발급 보류
2. 휴학생은 휴·복학원서 접수 보류
3. 퇴학, 제적, 졸업생의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 보류

제13조 (지급중지) 총장이 예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해 지급한다.

1. 보훈 장학금
2. 우등 장학금
3. 특별 장학금
4. 우정 장학금
5. 봉사 장학금
6. 공무원 장학금
7. 근로 장학금
8. 교환학생 장학금
9. 국외대학교류 장학금
10. 체육특기자 장학금
11. 어학우수장학금
12. 신입생장학금
13. 가족장학금
14. 돌봄장학금
15. 양지장학금
16. 창업장학금
17. 새터민장학금
18. 외국인장학금

19. 예술실기장학금

제14조 (시행제한) ① 총장이 예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장학금 Ⅱ유형의 시행을 부분 또는 전면 제한 할 수 있다.

② 특별장학금 Ⅱ유형의 세부선발기준은 예산규모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부 칙

(세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은 199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9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조, 제8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국외대학교류 장학금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6학년도 예성소속입학생(신학부만 해당)으로 입학한 자는 제7조, 제8조 특별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1조)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11조) 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11조)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제9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제15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9조～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제12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예술실기장학금의 음악학부는 지휘전공 재학생 졸업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제13조)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4조)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제13조, 별표 1, 별표 2)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별표 1, 제10조 별표 2, 제11조, 제13조)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별표 1, 제10조 별표 2)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별표 1, 제10조 별표 2)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별표 1, 제10조 별표 2)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별표 1, 제10조 별표 2, 제11조)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별표 1, 제10조 별표 2)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12조)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별표 1, 제10조, 별표2, 제11조)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 별표 2)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별표 1, 별표2)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별표1)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조, 제10조, 별표1, 별표2)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별표1, 별표2)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별표1, 별표2)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0조, 별표1, 별표2)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1	우등 장학금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① 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와 제9조에 해당되는 자. ② 동점자 우선순위는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1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 제외 ④ 선발 인원은 학부현원(졸업보류인원 제외)을 반올림한 인원의 10%로 한다	① 선발인원은 수석, 차석, 우등, 우수 순으로 균등 배분한다. ② 잔여인원은 수석, 차석, 우등, 우수 순으로 배분한다.	① 학부(과) 수석	① 수업료의 100%
				② 학부(과) 차석	② 수업료의 70%
				③ 학부(과) 우등	③ 수업료의 50%
				④ 학부(과) 우수	④ 수업료의 30%
2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본 대학교의 매 학년도 신입학 시험에서 과수석한 자와 이중 전체 수석 한 자 다만 전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함.	해당부서의 명단 통보자	① 전체수석 (4년)	① 등록금의 100%
				② 학부(과)수석 (1년)	② 등록금의 50%
3	보훈 장학금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자	①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의 100%
4	봉사 장학금	① 총학생회 간부로 부장급 이상인 자 ② 학보사 정기자 이상인 자 ③ 방송국 부장급 이상인 자 ④ 장학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① 해당부서의 명단 통보자 ② 단, 봉사장학금 내 중복지급 불가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동아리연합회회장	수업료의 100%
				② 단과대학별 학생회장, 대의원회부의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총학생회국장(13명), 학보편	수업료의 70%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집장, 영자신문편집장, 방송실무국장	
				③ 단과대학별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 학생회장	수업료의 50%
				④ 각 학부(과) 부학생회장, 대의원회 부장(8명), 동아리연합회부장(8명), 각 단과대학 부장(8명), 학보사정기자, 방송국부장, 영자신문사정기자	수업료의 30%
				⑤ 각 학부(과) 부장(5명), 각 학부(과) 대의원	수업료의 10%
5	지정 장학금	개교회 또는 기타 단체 및 개인이 장학금을 본 대학교에 기탁하고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한 자	장학금 기탁자 추천서 및 요청서류		
6	특별장학금 I유형	① 교직원 자녀 장학금(본 대학교 교직원의 직계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 재직증명서 1통 (1~2항 해당자. 다만 2항의 ㉯의 경우 경력증명서 1통)		수업료의 100%
		② 예성 차세대 지도자육성 장학금 ㉮ 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 중 국	③ 지방회장추천서 1통		수업료의 50%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내 미자립교회에 시무중인 담임교역자의 자녀 및 배우자 ㈏ 본 교단에서 시무중 사망한 국내 미자립교회 담임교역자의 유자녀(미혼자에 한함) 및 그 배우자			
		③ 본 대학교 재단 임직원 자녀	④ 기타 요구하는 서류		위원회 결의에 의함
		④ 본 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본인 및 자녀			위원회 결의에 의함
		⑤ 군종사관 장학금(군종사관 시험에 합격한 자)			재학 중 수업료의 100% 지급
		⑥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 장학금 ㉮ 국가고시 (5급공채(행정, 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 전문자격(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1차 합격 시 잔여학기 수업료의 80% 지급, 최종 합격 시 잔여학기 수업료 의 100% 지급 ㈏ 1차 합격 시 잔여학기 수업료의 50% 지급, 최종 합격 시 잔여학기 수업료의 100% 지급
		⑦ 예성지방회장추천자 전형 또는 예성목회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로서 모집당시 지원한 학부(과)(신			수업료의 35%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학부(과))에 재학하며, 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 이어야 함. 다만 입학 이후 교단변경자는 제외한다.			
		⑧ 기타 본 위원회가 선정하는 자			위원회 결의에 의함
		⑨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	⑤ 재직증명서 1통		수업료의 60%
		⑩ 총장이 추천한 자	⑥ 추천서 1통		일정액(총장기탁금)
7	우정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① 기초생활수급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한국장학재단의 차상위계층 인정 서류)		수업료의 50%
8	가족 장학금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2인 이상 재학하고 있는 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재학증명서(본인 및 가족 각1부) ③ 성적증명서(가족 1부)		수업료의 50%
9	근로 장학금	① 근무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학생지원처에서 승인한 자 ② 각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특수실습실에서 근무하는 자 ③ 근로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교	신청서 또는 관련 부서 지정명단		① 장학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② 매년 최저임금시급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내 근로프로그램(홍보대사, 외국어 교육, 친구상담사, 튜터)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④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장학금 관련 근로장학생 ⑤ 장학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4항 해당자)
10	공무원 장학금	① 관공서 근무자	재직증명서 1통		수업료의 20%
		② 7, 9급 공채 합격자	공무원 합격 증명서 1통		
11	국외대학교류 장학금	① 국외대학 교류프로그램에 선발된 자(다만 현지 학교 수업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자매 대학간 상호교환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은 제외한다.	해당부서의 명단 통보자		일정액
12	체육특기자 장학금	①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① 시상 상장 사본 ②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선수 증빙서류 * 신(편)입학자의 경우 신(편)입학 직전년도까지의 취득성적 인정		1년간 등록금의 100%
		②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친선 및 초청대회 제외)			1년간 등록금의 100%
		③ 전국체전 1, 2위			1년간 등록금의 100%
		④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1, 2, 3위 입상한 자(친선 및 초청대회 제외)		1위 입상한 자	1년간 수업료의 80%
				2위 입상한 자	1년간 수업료의 70%
				3위 입상한 자	1년간 수업료의 50%
		⑤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로서 위 ①~④에 해당하는자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다만, 올림픽종목 국가대표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함)			
13	외부 장학금	① 외부 장학재단(장학회)의 규정에 의거 또는 외부기관(개인)이 추천한 자 ②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장학금	① 추천서 혹은 요청 서류 ② 해당부서의 명단 통보자		일정액
14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성적증명서 1부(*입학 첫학기에만 해당) ③ 성적증명서 1부	① 신(편)입학생 1. TOPIK 5,6급 2. TOPIK 3,4급 3. 그 외	① 신(편)입학생 1. 등록금의 50% 2. 등록금의 40% 3. 등록금의 30%
				② 재학생 1. 평점평균 2.8이상	② 재학생 1. 등록금의 40%
15	어학우수장학금	① 유형A 1. 중국어(신HSK) 6급(전공자) 중국어(신HSK) 5급(210점)(비전공자) 2. 토익 900점 혹은 토플(IBT) 105점(전공자) 토익 850점 혹은 토플(IBT) 100점(비전공자) 3. 일본어 JPT 880점	공인어학성적증명서 1부 * 공지된 기간 내 취득한 성적표만 인정함 *신(편)입학 이전 취득 성적 불인정 *모국어 제외		100만원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② 유형B 1. 중국어(신HSK) 5급(210점)(전공자) 중국어(신HSK) 5급(195점)(비전공자) 2. 토익 800점 혹은 토플(IBT) 90점(전공자) 토익 750점 혹은 토플(IBT) 85점(비전공자) 3. 일본어 JPT 850점			70만원 * 동일 언어로 동 유형 2회 이상 수혜 불가 * 동일 언어로 상위 점수를 얻었을 경우 170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
16	예술실기장학금	교내 실기성적 우수자(예술대학 각 학부, 전공별)	① 실기성적 증빙 및 심사기준표 ② 해당학부(과) 회의록	① 음악학부: 3명 ② 실용음악과(공연음악예술학부 포함): 3명 ③ 연기예술학과(연기예술 전공 포함): 3명 ④ 영화영상학과(영화영상 전공 포함): 3명 ⑤ 뷰티디자인학부(3부 포함): 3명	45만원 지급
17	창업장학금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서 입학 이후 창업한 자(다만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융·복합 전공자 및 학부(과) 연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창업동아리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1부(창업교육센터)		수업료의 30%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합 지원자 지원 가능			
18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 및 자녀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③ 학력인정증명서 1부	① 거주지보호기간중(5년)에 있는 자 ②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인자로서 만 35세 미만인 자 ③ 새터민 자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	등록금의 100%
				④ 새터민 본인으로서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위 ①,②,③,④ 해당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2. 새터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 3. 새터민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등록금의 50%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19	영암장학금	교내 설교대회 성적우수자	해당부서 확인서 1부		일정액
20	사랑장학금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① 해당부서의 명단 통보자 ② 장애인 증명서 1부		100만원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50만원
21	특별장학금 Ⅱ유형	① 경진대회 장학금 (학부(과)별 및 부속기관 경진대회 성적 우수자)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정명단		일정액
		② 언어교육 장려 장학금	해외취업지원센터 지정명단		
		③ 스펙쌓기 장학금 (취업 관련 자격증 및 외국어 성적 취득자)	증빙서류 사본 1부		
		④ 2유형 대응 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제사정 곤란자)	기타 요구하는 서류		
		⑤ 면학 장학금(일정 성적우수자)	기타 요구하는 서류		
		⑥ 학술정보장학금(학술정보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학술정보관 지정명단		
		⑦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총학생회 지정명단		
		⑧ 취업지원장학금 (대학일자리개발처에서 시행하는 취업프로그램)	대학일자리센터 지정명단		
		⑨ 학습지원장학금 (교수학습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정명단		

번호	장 학 종 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지급 구분	지급 금액
		⑩ 융복합 공모전(프로젝트) 참여 장학금 (융복합 전공자로서 국제, 전국 또는 시/도 단위 규모의 외부 공모전에서 상위 3위내 입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⑪ 특별재난지원장학금	기타 요구하는 서류		
		⑫ 융복합장려 장학금	기타 요구하는 서류		
		⑬ 마이크로전공 장려 장학금	기타 요구하는 서류		
		⑭ 장학 위원회가 승인하는 장학금	기타 요구하는 서류		
22	양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4~6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일정액
23	위드유(다문화) 장학금	내국인이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자와 혼인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본인이거나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수업료의 30%
24	대응투자장학금	해당 국가장학사업 선발자	해당 국가장학사업 요청 서류		해당 국가장학사업 기준 금액
25	디딤돌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일정액